



양계업 관련 부가가치세

양계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다.

1. 사육수수료를 받는 양계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가 위·수탁 사육계약에 의하여 양계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의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수탁 사육해 주고 사육한 양계의 수량에 따라 일정액의 사육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대상이 된다.

즉, 위와 같이 사육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세법에 축산용 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시설을 구입할 때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영세율의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제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1) 영세울의 적용대상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2008. 2. 22. 개정)
6. 자동급수기/ 7. 낱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3. 이표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2008.2.22. 개정)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9. 원유냉각기(2008. 2. 22. 개정)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크리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2006. 2. 9. 신설)
52. 채밀기(採蜜器, 2006. 2. 9. 신설)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54. 사료법에 의한 사료

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바,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자동급이기 등 축산시설을 구분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특히 축분처리시설을 건축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및 분뇨저장탱크까지 영세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철근콘크리트로 제작하는 것도 영세율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축산시설을 누가 공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영세율의 대상이 된

다. 실무적으로 축산시설을 일반 건설업자가 공사하다보니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위의 규정을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동물약품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1) 환급대상 기자재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다음의 기자재로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돔자리용, 발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2008. 2. 22. 개정)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재(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의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2008. 2. 22. 신설)
22. 폐사축처리기(2008. 2. 22. 신설)
23. 축사세척기(2008. 2. 22. 신설)
24. 카우브러쉬(2008. 2. 22. 신설)
25. 축산 악취제거기(2008. 2. 22. 신설)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2008. 2. 22. 신설)

※ 환급대상 기자재 중 축산업에 해당되는 것만 열거하였음.

2) 환급절차

1. 약품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받되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받는다.
2.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한다.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다.
 - ① 농민이 직접 환급신청하는 방법
 - 농민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②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신청 하는 방법
 -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

는 농협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농협,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농협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를 매분기말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신청 받은 농협에서 환급을 받아 농민에게 교부해 준다.

- 세금계산서
- 이·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음)

3) 환급기간

약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이후 25일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

4월말까지 양도소득세 1,600억원 조기 환급 국세청, 환급대상 여부 및 세액을 직접 확인해 개별통지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오는 4월말까지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기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 5월에 확정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유형별로는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이 8,500명, 1,530억원으로 이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 → 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종과제외 요건 확대(10년 → 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등 1만 1,500명도 70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 여부 및 세액을 직접 확인해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직접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 등으로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문의 : ☎ 1588-0060 국세청 고객센터